1968년도~

학 칙

학성중학교

학 회

학 원 중 학 교

학 성 중 학 교 학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교는 교육법에 의하여 중등 보통 교육을 실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교는 학성중학교라 칭한다.

제 3 조 본교는 경상남도 울산시 신정동 143번지의 3에 설치한다.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 4 조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 5 조 제1학년에 입학 할수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로 한다.

1. 국민학교 제 6학년을 졸업한자
2. 특별시 교육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행하는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 고시에 합격한 자
3. 문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4. 외국에서 6년의 학교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제 3 장 학급수 및 학생정원

제 6 조 학급수는 각학년 6학급 씩 전학급을 18 학급으로 한다.

제 7 조 본교 학생 정원은 1 학급당 60명 씩 1080명으로 한다.

제 4 장 교과과정 및 수업일수

제 8 조 각 학년의 교과과정은 별표에 의한다.

제 9 조 수업일수는 매학년 220일 기준으로 한다.

제 5 장 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 10 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눈다.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 까지

제 2학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 11 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3. 개교 기념일 3월 16 일
4. 하기 휴가 7월 25일부터 8월 말일에 이르기 까지
5. 동기 휴가 12월 25일부터 익년 1월 말일에 이르기 까지
6. 학년말 휴가 2월 25일부터 2월 말일에 이르기 까지

전항 각호 외에 비상 재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시 수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

휴업일에도 필요가 있을시는 실습을 과하는 일이 있다.

제 6 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제 12 조 각 학년의 과정의 수료 또는 전학년의 졸업을 인정할에는 평시에 성적을 고사하여 정한다.

제 13 조 학교장은 전학년의 과정을 수업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제 1호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7 장 입학 전학 휴학 퇴학 및 징벌

제 14 조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의 수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의하여 입학을 결정한다.

제 15 조 본교 제2학년 이상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최고 학년을 제외하고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 할수 있다.

제 16 조 본교 제 1학년에 입학 하려하는 자는 따로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원서 이력서 호적초본 (호적등본으로서 대용할수있음) 사진 및 출신학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제 17 조 제2학년 이상에 전이학 하려는 자는 전조에 규정한 서류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전학년의 성적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입학을 허가 받은자는 따로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19 조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전학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시에 부재한 경우에는 당리 본교 소재시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보증인 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학교장이 부보증인을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 21 조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휴학하려 하는자는 그 사유를 갖추어 내용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청원하여야 한다.

제 22 조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3개월이상 1년 이하로 한다.

제 23 조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려 하는자는 그 사유를 갖추어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4 조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이 돌출한자 또는 특히 선행이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됨만한 학생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 25 조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수 있다.

징계는 그 정도에 의하여 근신 및 퇴학으로 한다.

제 26 조 학생이 다음의 각호의(1)에 해당할 때는 퇴학을 명할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한자
2. 학력이 열등하여 성업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3.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이 부족한 자

제 3 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 27 조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수업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 28 조 학교장은 수업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출석을 정지하고 또는 퇴학을 명할수 있다.

부 칙

본 학칙은 서기 19[illegible]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별지 1)

제 : 고 시 의

제 고 졸 업 장

학교인	본 적
	성 명

생년월일

위의 사람은 본교 ○개년의 전 과정을 졸업하였기로 본장을 수여함.

서기 년 월 일

학성중학교장 직인

학 칙 [illegible]

제 1 장 총 칙

학생[illegible]학교 학생은 [illegible]한 마음과 [illegible]근한 몸으로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며 [illegible] 학생으로서 [illegible]을 [illegible] 위하여 [illegible]한 교육을 수립하고 학생[illegible]학교의 발전과 [illegible]을 [illegible]우고자 이 규정을 두니 학생은 이 취지를 명심하고 학교의 [illegible]분에 어긋남이 없이 자기의 의무를 다 할것이다.

제 2 장 교내 생활

1. 학생은 등교후 외출을 [illegible]하며 부득한 사정이 있을때는 반드시 담임 또는 지도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외출증 교부)
2. 학생은 교사, 내빈에, 대하여서는 공손한 인사와 언어 [illegible]동을 하여 예의 범절을 지켜야 한다.(상대에서는 목례)
3. 학생은 교사내외의 청소와 [illegible]경[illegible]정의 정돈에 힘써야 한다.
4. 학생은 [illegible]물을 깨끗이 사용하고 [illegible]을 잘 [illegible]을것이며 지정된 곳만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중물의 파괴 손[illegible]행위를 할수 없으며 [illegible]을 있을시는 즉시 [illegible]하여야 한다.
6. 음식물은 지정된 장소 또는 교실이외에서 먹어서는 안되며 점심시간 이외에 먹는 일이 있어도 안된다.
7. 학생은 학교에 교과서와 교구이외 불량한 서적이나 물품을 가져오거나 소지하여서도 안된다.
8. 교실에서는 정숙하고 각자 학습하여야 하며 낙서를 하여서는 안된다.
9. 학생들에게 오는 편지는 지도교사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우편물 처리 규정에 준함)

교 육 과정 시 간 배 당 표

(주 당 시 수)

학년 / 과목	한 년 별 시 간 수			
	1	2	3	계
국 어	(5) 10	(5) 10	(5) 10	(15) 30
수 학	(4) 8	(4) 8	(4) 8	(12) 24
사회생활 국 민			(1) 2	(1) 2
사회생활 역 사		(3) 6	(2) 4	(5) 10
사회생활 지 리	(4) 8	(1) 2	(1) 2	(6) 12
과학생활 동 상	(2) 4	(2) 4	(2) 4	(6) 12
과학생활 정 글	(2) 4	(2) 4	(1) 2	(5) 10
체육생활 체 육	(2) 4	(2) 4	(2) 4	(6) 12
체육생활 율 동	(1) 2	(1) 2	(1) 2	(3) 6
가 사	(4) 8	(4) 8	(4) 8	(12) 24
음 악	(2) 4	(2) 4	(2) 4	(6) 12
미 술	(2) 4	(2) 4	(2) 4	(6) 12
(외국어 영어)	(4) 8	(4) 8	(5) 10	(13) 26
반 공 도 덕	(1) 2	(1) 2	(1) 2	(3) 6
특 활	(2) 4	(2) 4	(2) 4	(6) 12
계	(35) 70	(35) 70	(35) 70	(105) 210

학 생 생 활 수 칙

제 1 장 총 칙

학생중앙고 학생은 부모님의 따뜻한 품으로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며 인격 함양으로서 덕전을 닦기 위하여 건전한 교육을 수립하고 학생중앙고의 발전과 전통을 빛내고자 이 규정을 두니 학생은 이 취지를 명심하고 학교의 본분에 어긋남이 없이 자기의 의무를 다 할것이다.

제 2 장 교내 생활

1. 학생은 등교후 외출을 금하며 부득한 사정이 있을때는 반드시 담임 또는 지도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외출증 교부)
2. 학생은 교사, 내빈에, 대하여서는 공손한 인사와 언어 행동을 하여 예의 범절을 지켜야 한다.(상대에서는 목례)
3. 학생은 교사내외의 청소와 환경정리 정돈에 힘써야 한다.
4. 학생은 범소를 깨끗이 사용하고 물을 잘 다음것이며 지정된 곳만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중물의 파괴 오손행위를 할수 없으며 만약 있을시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6. 음식물은 지정된 장소 또는 교실이외에서 먹어서는 안되며 점심시간 이외에 먹는 일이 있어도 안된다,
7. 학생은 학교에 교과서와 교구이외 불량한 서적이나 물품을 가져오거나 소지하여서도 안된다.
8. 교실에서는 정숙하고 각자 학습하여야 하며 낙서를 하여서는 안된다.
9. 학생들에게 오는 편지는 지도교사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우편물 처리 규정에 준함)

10. 교실내외에서 침을 뱉거나 휴지를 버려서는 안되며 물이져 있는 장지는 보는 즉시 주워야 한다.

11. 학생은 교구실 출입시에는 반드시 노크를 하는 예절을 하여야 한다.

12. 물품의 분실이나 습득을 한 사람은 지도자에 신고하여야 한다.(습득물 처리부)

13. 학생은 학우의 인격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이념에 알맞은 생활을 하여야 한다.

14. 학생간의 논쟁 또는 언쟁이 지나칠 때에는 교칙에 의하여 처벌한다.

15. 자기 전용 걸상은 이름을 써붙여 파손되지 않게 깨끗이 사용해야 한다.(3년간)

16. 놀이에 있어 사행성이 있는 오락은 금한다.

17. 위험한 곳의 출입을 금한다.(옥상출입, 축대)

18. 각종 시험은 부정 없이 정직한 태도로서 응해야 한다.

19. 회비금은 매분기 (1/4. 2/4. 3/4. 4/4)별 첫달 15일 안으로 서무과에 납부 하여야 한다.

20. 납부금은 초례전에 서무과에 납부하고 다액은 담임선생님께 보관한다

21. 학생증서는 생활지도과 또는 담임의 승인을 득한후에 허락한다.

제 3 장 교 외 생 활

1. 외출할 때는 반드시 학생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학생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해서는 안된다(다방. 음식점. 요정. 당구장 양과점. 기원. 성인관. 기타 유흥점)

3. 학교의 허가없이 각종 집회나 경기에 참가할수 없으며 강좌나 개인 교수를 받을 학생은 사전에 지도과에서 야간외출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2. 외출 등교시는 제복 제모에 한한다.

3. 교복은 하복 동복으로 나눈다.

1) 하복은 6월 -9월 2) 동복은 10월 -5월

3) 하복 : 상의 복지-메도롱 색깔-백이지

: 하의 복지-스레파 색깔-곤색(반바지)

4) 동복 : 상.하의 복지-스레파 색깔-검정색

기일은 그 당시 기후 형편에 따라 학교에서 지시한다.

4. 교복은 본교에서 지정한 규격에 의하여 입어야 한다.

5. 웃옷에는 카라, 옷크, 단추, 뱃지, 학반표시 및 명찰등을 소정의 위치에 반드시 달아서 입어야 한다.

6. 체육시간에는 반드시 본교 지급 체육복을 입어야 한다.

7. 모자는 반드시 본교 지정된 모자를 써야 한다.

8. 신발은 동복에 검정 운동화를 하복에는 흰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9. 장식은 ㅣㅜ 이상을 착용하지 아니며 몸은 청결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출 결 규 정

1. 학생은 특별한 이유이외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하지 못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을 하여야 할 때는 보호자의 연서로 결석 신고서를 정날 학교에 제출하고 1주일 이상 초과할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단 결석으로 처리한다)(신고서 양식 참조)

2. 등교하면 일과가 끝날 때까지 교내에서 나가지 못하며 결과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는 담임 또는 지도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퇴는 특별한 사유이외는 보호자의 직접 신고서가 있어야 한다)

3.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간주한다

4. 통행은 좌측 통행을 물론 길가에서 장난이나 놀이를 삼가 할 것이며 횡단도로선을 잘 지켜 교통 도덕을 준수하고 제차에 뛰어 오르 내림이 없도록 하고 승하차 시에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

5. 야간외출은 되도록 삼가 할 것이며 다음 시간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1) 하 절 4월 9월 21 : 00

2) 동 기 10월 3월 19 : 00

6. 원거리 여행을 할 때에는 사전에 담임교사를 통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7. 가정의 변동 또는 주소의 이동이 있을 때는 그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8. 비상소집의 연락이 있을 때에도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다음 학생에게 책임지고 연락 한 것이며 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야 한다.

9.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하여 상호의 교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교외에서 선생님이나 윗어른을 만났을 때에는 공손히 인사하고 상급생 하급생 간에는 걸어면서 인사를 교환하여야 한다.

11. 보호자의 허가없이 외박이나 가출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 의하여 처벌한다.

12. 자취 또는 하숙을 하려고 하는 학생은 사전에 학교에 신고한다.

13.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에 부딪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는 교도교사나 담임교사와 의논하여 좋은 길을 여도록 한다.

제 4 장 용 의 복 장

1. 용의 복장은 항상 단정히 하여 학생의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개근상은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1 회도 없어야 한다.
5. 정근은 결석 3 일 미만인 자로 한다.
6. 특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개근(무고)인을 때에 한하여
 1) 부모상 5 일 — 기일 — 1 일
 2) 조부모 3 일 — 기일 — 1 일
7. 정학 처분 기간은 복상기의 동결에 준한다.
8.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의 출석은 그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 6 장 주번 및 급 규정

1. 학교 및 학급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 주번을 둔다.
 1) 전교 주번장 1 명 (정복지도부)
 2) 부 주번장 1 명 (학교 학년)
 3) 학급주번 3 명
2. 전교주번장은 생활지도부에서, 부 주번장은 주번교사가 지명하고 학급 주번은 담임교사가 지명하여 1 주일간 담당케 한다.
3. 주번들은 주일기간 3 분전에 등교하여 주번교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고 주번종례후 지시를 받고 귀가한다.(주번 조회 종례는 주번모임 누자 선도로 교무실 앞에서 한다)
4. 주번활동은 반드시 소정의 주번 마—크를 왼 윗가슴에 패용하고 활동한다.
5. 학급임지는 임으로 지정하고 담임교사 주번 지도교사의 검열을 득해야 한다
6. 주번은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교실내외의 청결 정돈 안전 준비등을 해야 한다.

7. 주번은 시간표 변동을 신속히 연락하고 학급에서 발견임을 선생님에게 보고하며 집합 시간에는 학급의 음료수를 공급한다.

8. 주번은 청소 당번을 지도하며 학급비품 관리 및 분실과 파손이 있을 때에는 담임에게 연락한다.

9. 주번장은 월요일 전체 모임시 주번교사가 발표하는 주생활 목표를 실천하는데 주번교사를 보좌하고 주번 모임때 정열 참석한다.

10. 주번은 학급반원을 위하여 필요한 봉사를 한다.

11. 매주 토요일 종례시 다음주 주번명에게 인계한다.

제 7 장 생활지도부원 공통규정

1. 지도부원은 부장 1명 부원 2~3명으로 조직되며 지도부의 지휘를 받아 학교질서 유지와 사고의 미연방지에 노력한다.

2. 당번은 3분전에 등교하여 교문에서 용의 복장등을 지도하고 이를 임지에 기입한다.

3. 교내 학생태도를 잘 살피어 상호간의 싸움 도난행위 그 외 학생신분에 어긋난 일이 있을때는 즉시 지도교에 보고한다.

4. 교외에 있어서 불교학생의 선행 비행 또는 용의 복장 금지구역 출입을 발견지도 하고 이를 담당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지도부원은 전체모임이나 전교 행사때는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유지에 책임지고 협동한다.

6. 교통 지도반은 별도 지도교의 지시를 따른다.

제 8 장 상 벌 규 정

1.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징의 표창한다.

1) 품행성적이 우수한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출석이 만점자나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자

3) 학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 명예를 현저히 높이고 공로가 있는자

4)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자

2.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각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징계를 가할수 있다.

징계는 근신(3일이내) 유기정학(1주일 이내) 무기정학(1주일이상) 퇴학(제적)으로 한다.

3. 학생을 포상 또는 징계하였을 때는 포상 대장과 상벌대장에 기입한다

4. 학생에게 징계를 가하고자 할 때는 지도과의 결의(담임합의)에 의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실시한다.

5. 학생에게 징계를 가하고자 할 때는 보호자에게 통고하여 내교케 하며 이를 해제시킬 때는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연서 서약서를 제출한다

6.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퇴학한다.

1) 교내에서 폭행을 유발한 자

2) 수업 태도가 불량한 자

3) 지각이 상습인자

4) 학우간에 폭행을 한 자

5) 학생으로서 꼭 필요한 물품을 소지한자

6) 무단 결석 한자(1 일)

7) 기 타

7. 다음 각항에 해당한 자는 근신케 한다 (3 일 이내)

1) 선생님 지시를 어긴자

2) 학교출입금지 구역에 출한자

3) 학우 또는 타인의 처벌을 손상케 한 자

4) 학우간에 언쟁 유발한 자

5) 등교후 무단 외출한 자

6) 교사 교구를 파손 또는 기피물을 고의로 방조한 자

7) 무계을 결석 2 회 인자

8) 무단결석 3 회인자

9) 기타 학칙 신분에 위배된 행동을 한자

10) 훈계 3 회 이상인자

8.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기처학에 처한다(1주일 이내)

1) 특장 무반이 상습인자

2) 담교자의 지가업이 금강을 방임한자

3) 무단결석 6 회 인자

4) 무계을 결석 3 회 이상인자

5) 학교장의 허가없이 집회를 하거나 그에 동한자

6) 교내외를 혼돈하고 악의적인 행동을 하여 물의를 야기킨 자

7) 근신이 2 회 이상 해당하는자

8) 공용물을 고의로 파손한 자

9) 남여사이에 풍기를 문란 시킨자

10) 고아송에 부정행위를 한자 (그 시간 과목은 0점으로 하고 시험이 끝나는 날부터 처벌)

11) 상여 통금을 방론하고 학우에게 폭행 및 금전을 강요한 자

12) 고의로 수업 또는 학교 행사를 기피한 자

13) 기타 학생신분에 위배된 행동을 한자

9.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정학에 처한다.(1주일 이상)

1)무계획 결석 5일 이상인자

2)유기정학이 2회 이상이자

3)금지구역에 상습적으로 출입한자

4)선생님에 대하여 불손한 언동을 한자

5)남의 물건이나 금품 또는 학교 공용물을 절취한자

6)학생의 지도상의 문제로 보고자의 출두를 요구하여도 기한 3회 이상 불응한자

7)폭행 음주 흡연 한자

8)대외적으로 학교 명예를 손상시킨자

9)기타 학칙 전반에 위배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자

10.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퇴학(제적)케 한다.

1)1학기간 40일 . 1년간 1/3일 이상 결석한자

2)유기정학 3회 무기정학 2회에 처한자

3)범죄에 의하여 국가 권력 기관으로 부터 처벌받은자

4)타인 불순한 단체 정당에 가입한 학생

5)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적 또는 단체적으로 수업 또는 시험을 거부하거나 이를 계속 선동하는 자

6)성적이 불량하여 2회.이상 진급이 무효된자

7)남여간의 문기를 문란케 하여 사회의 물의를 이르킨 자

8)무계획 결석 계속 10일 이상인자

9)기타 학칙전반에 위배되고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한자

12. 본 규정에 정용되지 않으나 학교장이 학생으로서 적당치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13. 본계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지도 누가 기록카드에 기입하다

※ 본 규정은 19/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서식 1호

결 석 신 고 서

제 학년 반 번
성명

1.결석기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

2.결석사유

위와같이 신고 합니다.

197 년 월 일

학생성명 인
보 호 자 인

학성중학교장 귀하

서식 2호

여 행 원 서

제 학년 반 번
성명

1. 여행지

2.여행기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

위와같이 여행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197 년 월 일

학생성명 인
보 호 자 인

학성중학교장 귀하

서식 3호

유 학 원 서

제 학년 반 번
성명

1. 유학기간 197 년 월 일부터
197 년 월 일까지

2. 유학이유

위와같이 유학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197 년 월 일

학생성명 인
보 호 자 인

학성중학교장 귀하

서식 4호

복 교 원 서

제 학년 반 번
성명

197 년 월 일부터 197 년 월 일까지 휴학하였다가 이번 복교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197 년 월 일

학생성명 인
보 호 자 인

학성중학교장 귀하

학생회장과 시행규정

학 성 중 학 교

제 1 조(명칭) 본회는 학성중학교 학생회장과 칭한다.

제 2 조(사무) 이회의 사무소는 학성중학교에 둔다.

제 3 조(목적) 1.온순한 품과 슬기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의 대한 생활이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게 한다.

2.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친목생활에 의여 각자의 본분과 책임을 자각케 하여 자율건전 친목활동에 앞서게 한다.

3.민족 단결을 도모하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기하고 학생의 본분에 이탈한 국권교육진작 및 학생 교육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소집) 이회는 학성중학교에 재학하는 전 학생으로 조직한다.

제 5 조(임원) 이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 3 중2)

2. 대의원 48명 (각반 3명)

제 5 조(임원선출 임기 및 직능)

1.회장 부회장은 전학생의 직접 비밀 무효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본 학년간으로 하며 회장은 회무를 관리하고 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대의원은 각 학급의 회장,부회장의 1 명(3명)으로 하고 그 임기는 본 학년간으로 한다.

3.선거방법은 민주적 선거 방법에 의해 학생회에서 자율 지도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하며 선거관의 위원회를 둔다.

제 7 조(대의원회)

1.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서 구성하며 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2.대의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대의원회를 소집할 때는 지도위원회에 그 장소와 시간과 안건을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4.대의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의결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하며 가부동인 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8 조(지행부서)

1.이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무부 생활지도부 체육부 학예부 기획부를 둔다.

2.각부에 부장 1인을 두며 부장은 회장이 대의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대의원회에 참석하나 의결권은 없다.

제 9 조(사무분장)

1.총무부는 총무반. 경리반. [illegible]반. 환경보호부반. 상호반. 홍계반을 두고 다음사항을 맡아본다.

가. 총무반---인사.서무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사항

나. 경리반---학생회 경리에 관한 사무

다. [illegible]반--- [illegible]에 관한 전반적 사무관장

라. 환경보호부반---환경보호 전반적 사무관장

마. 상호반---학생 상호에 관한 기초 및 처리

바. 홍계반---제반 홍계에 관한 사항

2. 생활지도부는 생활지도반, 상담반, 미화반을 두며 다음사항을 맡아본다.

가. 생활지도반—학생 전반의 교내외 생활에 관한 사항

나. 운영봉사반—전교 운영 교내외 봉사에 관한 사항

다. 상담반—학생 상담에 관한 전반적 사항

라. 미화반—학교내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3. 학예부는 문예반, 방송반, 음악반, 미술반, 서예반, 연극반, 과학반, 도서반, 방송반, 영어회화반, 시사반, 사진반을 두며 학예 활동에 관한 사항을 맡아본다.

4. 체육부는 농구반, 축구반, 배구반, 탁구반, 육구반, 기타반을 두며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맡아본다.

5. 기예부는 수관반, 원예반, 목공반, 공작반, 전기반을 두며 기예활동에 관한 사항을 맡아본다.

제 10조 (지도기간) 이과의 지도위원을 다음과 같이 두어 학생의 운영을 지도한다.

1. 지도위원은 각 등학교 전 교직원으로 한다.

2. 지도 위원회는 지도위원으로서 구성하며 교육의 전반에 대하여 이를 지도하고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검토 인준한다.

3. 지도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지도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지도위원의 위원장은 교장, 부의원장은 교감이 된다.

5. 승급학생과 제외 사유는 지도위원회의 추구과장인 지도위원이 관찰하며 부의장 과장의 승인을 득하여 행사한다.

6. 지도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지도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1971 년 3 월 1 일